

오산도시공사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오산도시공사(이하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월정기권 주차 이용에 관한 약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정기 주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출차 하여 주차하는 행위
2. 월정기권: 신청한 기간에 따라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출차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이용권으로 추첨제 정기권과 선착순 정기권이 있음
3. 추첨제 정기권: 3개월 단위(분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4. 선착순 정기권: 취소, 미 신청 등 추첨제 정기권의 잔여석이 발생하면, 다음 추첨제 정기권 신청 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신청하는 정기권으로 매월 20일 10시부터 말일 24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1개월~3개월 단위)
5. 야간 월정기권: 신청한 주차장을 야간시간(19시~익일09시)에만 입·출차하고 주차할 수 있는 월정기권
6. 주간 월정기권: 신청한 주차장을 주간시간(06:30~18:30)에만 입·출차하고 주차할 수 있는 월정기권
7. 전일 월정기권: 신청한 주차장을 24시간 종일 자유롭게 입·출차하고 주차할 수 있는 월정기권
8. 정기권 신청일: 주차포털 홈페이지에서 추첨제 또는 선착순 정기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일자로 추첨제 정기권의 경우 3, 6, 9, 12월 각 해당 월 10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이며, 선착순 정기권의 경우 매월 20일 10시부터 말일 24시까지
9. 신청자: 월정기권 이용을 희망하여 해당 주차장 월정기권을 신청하고, 추첨에 선정되거나 선착순 안에 들어 결제 기회가 부여된 자
10. 취소자: 월정기권 이용 개시일 전에 월정기권 신청 또는 결제를 철회한 자
11.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여 월정기권을 신청 및 결제 후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
12. 공고매수: 주차장별 상황을 고려하여 당월 홈페이지에 판매하기로 계획한 월정기권의 매수
13. 개인차량: 사업자 차량이 아닌 이용자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리스·렌트한 차량
14. 가족차량: 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표기되는 가족의 차량 또는 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자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
15. 사업자차량: 법인 명의로 등록(소유) 또는 법인 명의로 리스·렌트한 차량 및 개인 사업자 명의로 등록 또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리스·렌트한 차량
16. 잔여석: 신청일 동안 월정기권 홈페이지 판매 후 남은 분량
17. 신청개시일: 주차포털 홈페이지에서 월정기권을 신청 및 결제할 수 있는 시작일자
18. 사용개시일: 이용자에게 월정기권이 서비스 공급이 시작되는 날로, 신청 및 결제한 다음달 1일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월 정기 주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오산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오산 주차포털, parking.osuc.or.kr)에 접속하여 결제 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됩니다.
- ③ 공사는 운영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약관은 위의 제2호와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본 약관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물음에 “동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5조(월 정기 주차 운영 주차장)

월 정기 주차장의 운영은 아래와 같고, 주차장 규모 및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월정기권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차장명	위 치	총 주차면 (면)	급지	비고	정기권 운영 현황		
						종일	주간	야간
1	운암 공영	운암로 13-6	593	1	노외	●	●	●
2	어울림 공영	원동 772-15,16	163	1	노외	●		●
3	궐동 공영	궐동 692	229	1	노외	●		
4	은계동 공영	은계동 53	117	2	노외	●		●
5	삼미 공영	내삼미동 702-3	115	2	노외	●		●
6	오산천 공영	오산동 345-2 일원	144	2	노외	●		●
7	문화의거리2 공영	원동 763-15	40	1	노외			●
8	오색시장 제1공영	오산동 854-4, 10	105	1	노외			
9	오색시장 제2공영	오산동 315-2	180	1	노외	●		●
10	오산역 제1환승	오산동 625-1	216	1	노외	●		
11	오산역 제2환승	역광장로 37	132	1	노외	●		
12	세마역 환승	세교동 592-1	70	1	노외	●		
13	오산대역 환승	수청동 600	99	1	노외	●		
14	대원동 공영	원동 404-9	32	2	노외			
15	양산동 공영	양산동 670-4	64	2	노외	●		●
16	수청동 공영	수청동 635-2	55	2	노외	●		●
17	청학동 공영	청학동 188-5	46	2	노외	●		●
18	오산시청 부설	성호대로 141	550	-	부설			

19	오색문화체육센터 부설	오산동 345	198	-	부설			
20	운암2단지 공영	오산동 911-35일원	16	2	노상			

제6조(신청자격)

- ①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일반시민 누구나(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② 각 주차장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캠핑카/카라반의 경우 삼미 공영주차장에만 신청 가능하며, 오산 시민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7조(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 ① 종일 정기권의 이용기간은 사용 개시일 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까지이며,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주차할 수 있습니다.
- ② 주간 월정기권 이용 기간은 매월 1일 06시 30분부터 당월 말일 18시 30분까지이며, 야간 월정기권 이용자의 이용 기간은 매월 1일 0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까지입니다.
- ② 이용 시간 외 주차는 일반주차요금을 적용합니다. 일반주차요금은 주차장 별로 상이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이용요금)

- ① 주차 구획 사용 요금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제9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규정된 해당 급지별 월정기권 요금으로 정하며, 해당 조례 제10조(주차요금의 감면)에 의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구분	주차장명	위 치	정기권 요금
1	운암 공영	운암로 13-6	종일: 80,000원 주간: 50,000원 야간: 40,000원
2	어울림 공영	원동 772-15,16	종일: 80,000원 야간: 40,000원
3	월동 공영	월동 692	종일: 60,000원
4	은계동 공영	은계동 53	종일: 60,000원 야간: 30,000원
5	삼미 공영	내삼미동 702-3	종일: 60,000원 야간: 30,000원 캠핑카/카라반: 80,000원 (오산 시민)
6	오산천 공영	오산동 345-2 일원	종일: 60,000원 야간: 30,000원
7	문화의거리2 공영	원동 763-15	야간: 40,000원
8	오색시장 제1공영	오산동 854-4, 10	
9	오색시장 제2공영	오산동 315-2	종일: 60,000원 야간: 30,000원
10	오산역 제1환승	오산동 625-1	종일: 32000원 ※ 최대 할인 적용 금액으로

11	오산역 제2환승	역광장로 37	추가 할인 없음
12	세마역 환승	세교동 592-1	
13	오산대역 환승	수청동 600	
14	대원동 공영	원동 404-9	
15	양산동 공영	양산동 670-4	종일: 60,000원 야간: 30,000원
16	수청동 공영	수청동 635-2	종일: 60,000원 야간: 30,000원
17	청학동 공영	청학동 188-5	종일: 60,000원 야간: 30,000원
18	오산시청 부설	성호대로 141	
19	오색문화체육센터 부설	오산동 345	
20	운암2단지 공영	오산동 911-35일원	

제9조(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 ①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월정기권 요금이 감면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경우 신청 시 감면자격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야 하며, 아래에 따라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분	공통서류	감면서류	감면요건	감면율
일반승용	자동차등록증			없음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자가운전)	6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자가운전)	60%
경차		-	-	60%
저공해 (친환경차, 전기차)		① 저공해차량 발급 도장 날인 된 자동차 등록증 또는 ② 환경부 발행 저공해자 동차 증명서 또는 ③ 자동차 등록원부(저공 해 신청 원부 기재) 또는 ④ 저공해자동차스티커		50%
다자녀		①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두 자녀 이상, 막내 자녀 가 18세 이하) 또는 ② 아이사랑담은카드 또는 ③ 등본	아이사랑담은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차량	50%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확인증	본인이 직접 운전	50%
병역명문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병역명문가증 소지한 차량	50%
우수봉사자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증	본인이 직접 운전	50%
환승	-	-	환승주차장 이용	60%

1. 사업자(법인, 개인) 차량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 병역명문가, 우수봉사자)은 불가합니다. 다만, 차량을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경차, 저공해자동차, 환승)은 적용 가능합니다.

②감면 대상자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③ 차량등록증, 감면대상자 감면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 미만 상세주소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바랍니다.

④ 정기관 감면 적용은 당월 정기관에 한해 유효하며 소급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일반 요금으로 정기관 신청 후 정기관 감면 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기 이용분에 대한 소급환불은 불가합니다.

⑤ 직원 확인(무작위 현장점검 실시)에 따른 본인 미탑승, 증빙서류 허위 등 감면 부적격 대상임이 밝혀질 경우 부정 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월정기관 이용이 해당일로부터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신청)

① 공사에서 운영하는 월정기관은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 및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첨제 정기관은 분기별(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선착순 정기관은 추첨제 정기관 잔여석이 발생하면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정기관에 신청하여 당첨하면, 결제기간 내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추첨제 정기관은 전산에 의한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주차장의 장기 공사 등의 사정으로 정기관 이용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시: 1분기(1월, 2월, 3월)에 월정기관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전년도 12월에 인터넷으로 신청

② 추첨제 정기관 신청은 정해진 신청 개시일인 3월, 6월, 9월, 12월 각 해당 월 10일 00시부터 15일 24시까지 접수입니다. 신청 개시일은 공휴일과 관계없습니다.

③ 선착순 정기관 신청은 추첨제 정기관의 잔여석이 발생하면, 매월 20일 10시부터 말일 24시까지 접수입니다. 신청 개시일은 공휴일과 관계없습니다.

④ 월정기관 신청 시 차량등록증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하며 차량등록증 미첨부시 추첨 제외됩니다. 차량이 가족차량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자일 경우 증빙

서류 미첨부 시 감면 적용 불가합니다.

⑤ 차량번호 기준 주차장 1곳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핸드폰 번호(아이디)당 1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⑥ 신청 및 결제 안내 등 각종 안내는 신청자가 등록한 연락처로 보내므로 항상 최신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이용요금의 납부)

① 추첨제 정기권 이용 요금은 최초 정기권 신청 당첨 후 해당 월 16일 0시부터 익일(17일) 24시까지 주차포털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입금 또는 카드결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선착순 정기권 이용 요금은 최초 정기권 신청 당첨 시점에서 해당 월 말일 24시까지 주차포털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입금 또는 카드결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결제 기간 내에 즉시 결제하셔야 합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입금의 경우에는 가상계좌 발급 이후 24시간 내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결제 기간 내에 발급된 가상계좌에 24시간 내 정상적으로 입금이 완료될 경우 결제 기간이 지나더라도 결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자는 결제 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미결제로 인한 자동취소로 발생하는 일반주차요금은 신청자 본인이 납부하셔야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④ 제1항의 경우라도 추첨제 또는 잔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정기권 선정할 경우 국경일, 명절 등의 사정으로 해당 일자가 변경 가능하고, 이 경우 사전 홈페이지나 SMS문자 등으로 안내합니다.

제3장 이용변경 및 취소

제12조(사정변경)

월 정기 주차 수요 및 시간제 주차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일부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 주차 차량을 배정하는 것이므로, 시간제 주차 수요, 주차장 현장 상황 등으로 주차장 만차 발생 시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월정기권의 배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이용변경)

① 이용 개시 후 차량번호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변경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차량의 차량번호 단순 변경은 월1회에 한하여 본인 차량 또는 가족 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과 가족 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리스차량 이용 시: 리스(렌탈)계약서 추가 제출

2.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의 차량번호 단순 변경은 월1회에 한하여 동일 사업자(법인, 개인)명의 차량 또는 동일 사업자가 계약한 리스(렌탈)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리스차량 이용 시: 리스(렌탈)계약서 추가 제출

3. 개인 또는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이 사고 또는 수리로 인해 차량번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고증빙서류(보험사고증명원, 수리내역서 등)와 변경 후 차량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개인 또는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의 폐차, 매각, 리스(렌탈)차량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차량번호 변경은 월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폐차(매각)증명서 또는 리스(렌탈)계약서와 변경 후 차량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용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 기간 중 임시 차량 사용 필요시 사전에 변경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등록 조치를 받으신 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등록 조치 전 임시 차량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시간주차요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14조(이용요금의 반환)

- ① 이용 개시 전 환불신청 시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 ② 이용 개시 후 이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정기관 취소(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용기간 중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 요금의 80%를 반환합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은 실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 ③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주차요금(예: 월정기관 만료 후 발생한 일반주차요금 등)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15조(직권취소)

- ① 월정기관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사실 적발 시 월정기관이 정지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 자격 및 신청서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임(무작위 현장점검 실시)이 밝혀질 경우 월정기관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월정기관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영업행위, 적치물 적재,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로 본 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 2.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3. 주차장 운영시간 중 차량을 방치하여 이용 차량에 방해가 되는 차량
 -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 5. 정기관 신청 자격 또는 감면 자격이 아닌 상태로 월정기관을 이용하다 직원에게 적발된 차량
 - 6. 기타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④ 정기관 이용자는 제3항에 따른 정기관의 직권취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6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차량에 흠집 또는 기타 문제 발생을 공사에 배상·처리를 요구하실 때에는 이용자(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는 사고 정황을 확인합니다.
- ② 공사에서는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공사 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 정황을 확인하여 배상 처리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 주차장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이용자의 권리)

-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신청 1~3개월 중, 해당 월의 1일 ~ 말일)동안 자유롭게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주차(14일 이상 연속) 시 정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정기 주차 구획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주차 이용 차량 현황에 따라 주차장 만차 시 대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 ① 월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정기권 이용이 제한됩니다.
- ②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정차하고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 주차 시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여성우선주차구획, 전기자동차우선주차구획, 임산부 전용구획, 경형자동차 전용구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차내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차량으로부터 하차 시 반드시 차문을 잠가야합니다. 차량 내의 귀중품은 분실, 도난 시 주차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⑤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제19조(기타)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릅니다.

..... 부 칙

1. 본 약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 조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이용을 신청합니다.